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무 영향 검토

내년초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250개 기업 과세 영향권

Table of Contents

I. Pillar Two 제도의 도입배경

II. Pillar Two 개요

- 추가세액 계산 구조
- 추가세액 납부 방법

III. Pillar Two 준비

리더 메시지



신 창 환
전무 | Tax Partner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University of Rochester 회계학 석사
- 한국 공인회계사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고자 마련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하여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 기업들은 필라2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액을 적절히 공시하기 위해 최소한 2023년 말까지 Pillar2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완료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도입 배경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 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막고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
-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

2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두

-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

3 Pillar 제도의 도입

- OECD/G20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0여개국에 참여하는 Inclusive Framework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문제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Pillar 제도를 도입

4 Pillar Two

- Pillar One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또는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를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개요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37개국이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 2024년 1월 시행 예정

시행시기

- 202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의무

- 의무대상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 제출대상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현재 OECD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영문) 공개
(한국 법인세 신고서식과 유사함)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의무

- 의무대상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한 추가세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 제출대상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개요 - 적용대상

Pillar Two 제도의 대상법인(in-scope)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동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고정사업장 등('구성기업')은 필라2 계산의 기본단위

● 연결 기준(Consolidated group)

-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구성기업) 대상 산출 (Consolidated group)

- **구성기업이란?**

연결 소유 또는 통제를 통해 관련된 기업의 집합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기업에 포함

(a) 최종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b) 최종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포함되지 않으나 단지 규모, 중요성 또는 매각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제외된 경우

● 연간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이상

- 직전 4개연도 중 2개연도 이상 연결기준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 (환율은 판단대상 사업연도 직전 12월 평균 환율 적용)
(Total consolidated group revenue of €750 million or above)

● 다국적기업 그룹

- 2개국 이상 관할국에 소재한 기업(고정사업장 포함)들로 구성된 다국적기업 그룹(Applicable to the MNE groups)

추가세액 계산구조(1/2)

각 관할국의 GloBE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여야 하며, GloBE 이익과 손실은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일정한 조정(조세비용, 벌금 및 과태료 등 가산, 배당소득 등 차감등)을 거쳐 결정

$$\text{추가세액} = [\text{①(Pillar Two 순소득)} - \text{② (실질기반 적용제외)}] \times [(\text{글로벌 최저한세(15\%)} - \text{③ (실효세율)})]$$

① Pillar Two 순소득

최종 모회사 연결기준 재무회계상 순손익

세무조정

- ⊕
 - 손금불산입
 - 익금산입
- ⊖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세무)조정항목

- (+) 조세비용 : 법인세비용,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Pillar2 tax 등
- (-) 배당소득 : 10% 미만 1년 보유주식 배당금, 매각 후입선출법
- (+)(-) 지분 공정가치 평가손익 (10% 미만 포트폴리오주식 제외), 지분법손익, 지분 처분 손익 (10% 미만 포트폴리오주식 제외)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당기 손익처리, 한국세법과 동일하게 실현주의 적용도 가능 - 선택사항)
- (+)(-) 비대칭외화환산차익(손): 회계 및 세무상 기능통화가 다를 경우 조정
- (+) 뇌물, 리베이트, 벌금 : 벌금은 건별 EUR 50,000 이상, 뇌물 및 리베이트는 중요성 없음
- (+)(-) 이전 기간 오류 및 회계정책 변경 : 귀속시기
- (+)(-) DC연금 : 현금주의 (한국세법과 동일)
- (+)(-) 스톡옵션 (세무처리와 일치), 정상가격원칙,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보조금) (당기 수익처리원칙)
- (+)(-) 유형자산처분이익 Carried back (5년) - 선택사항

$$\text{Pillar Two 순소득} = \text{GloBE Income}$$

추가세액 계산구조(2/2)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계산하되,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 비율(5%)을 순 GloBE 이익에서 공제하여 실질기반 소득은 추가세액계산에서 제외하고, 실효세율 15%가 충족되도록 최저한세액을 추가세액에서 차감

$$\text{추가세액} = [\text{①(Pillar Two 순소득)} - \text{② (실질기반 적용제외)}] \times [(\text{글로벌 최저한세(15\%)} - \text{③ (실효세율)})]$$

② 실질기반 적용제외

- 실질기반 적용제외 = (유형자산 장부가치) x 5% (2024년 7.8%) + (급여비용) x 5% (2024년 9.8%)
- 경과기간 10년간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 0.2%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 0.4%씩, 급여는 연 0.8%씩 감소

③ 실효세율

- 1) 국가별 계산구조 =
$$\frac{\text{해당 국가 소재 구성기업들의 대상조세 합계액}}{\text{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A+B)}}$$
- 2)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영 또는 음수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함
- 3) 소수구성기업, 공동기업은 별도 산식에 따라 계산함

추가세액 신고 납부 방법

자회사에 미달세액 발생 시 이를 모기업이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

추가세액 납부방법: Top-down approach

-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에 과세권 부여함
- 만약 최종모회사 소재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 하위 모회사 소재국에 과세권이 넘어감
- 즉,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거나 모회사 소재국이 과세하지 않는 경우
→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 소재국들에게 과세권이 부여됨

각 구성기업 별
실효세율을 먼저 산출

Pillar Two 순소득과
실질기반 적용제외 금액을
결정하여 추가세액을 산출

해당 추가세액을
납부할 Entity를 결정

실효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1) 분모 금액인 최저한세 소득과 (2) 분자 금액인 대상조세 금액을 결정

Pillar Two 준비 - 고려사항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지 판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효세율 계산 및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협의 필요

✓ 명목세율

저세율 국가에 포함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외 국가의 명목 법인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한국 대기업이 많이 진출 되어 있는 국가들 중 헝가리, 아일랜드, UAE, 홍콩, 싱가포르 등은 대표적인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 영구적 차이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해외 자회사가 속한 국가에서 해외 자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에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의 영구적 차이의 세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저세율 국가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 세액감면, 세액공제, 보조금

한국대기업의 해외법인 투자에 있어, 해당국가에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부여하거나, 대규모 투자에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 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 저율과세)에는 저세율 국가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Pillar Two 준비 - Why Now?

Pillar Two 제도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이유



1/ 관련 정보 주석 공시

-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일부 다국적기업은 당기 평균 유효세율 15% 미만인 국가명, 가중평균 유효세율 등 정보 주석 공시

2/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 기준 발표(23년 2분기 예상) 즉시 적용

3/ 2023년 준비 요구

- 일부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 전에도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2023년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딜로이트 세무자문 전문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세무자문 본부는 업종과 업무 유형에 특화된 전문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 세무관련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 데 기여합니다.

Professionals



신창환 전무

Tax Partner | Business Tax

Tel : 02 6676 4583 |
E-mail : chanshin@deloitte.com



스캇 올슨 전무

Tax Partner | Tax-M&A

Tel : 02 6676 2012 |
E-mail : scoleson@deloitte.com



김선중 파트너

Tax Partner | Business Tax

Tel : 02 6676 2518 |
E-mail : sunjoongkim@deloitte.com



민지선 이사

Tax Director | Business Tax

Tel : 02 6676 2811 |
E-mail : jimin@deloitte.com



김희진 이사

Tax Director | Business Tax

Tel : 02 6099 4625 |
E-mail : heejinkim2@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컨설팅
성장전략 본부

손재호 Partner
고객산업본부 본부장
jaehoson@deloitte.com

정동섭 Partner
딜로이트 인사이드 리더
dongjeong@deloitte.com

김사현 Director
딜로이트 인사이드 편집장
sahekim@deloitte.com

HOT LINE
02) 6099-4651 / 6676-1414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and any attachment to it is for internal distribution among personnel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t may con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is intended solely for the use of the individual or entity to whom it is addressed. If you are not the intended recipient, please notify us immediately by replying to this email and then please delete this communication and all copies of it on your system.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카카오톡 채널과
딜로이트 앱에서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Android 앱



ios 앱